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 받은 경우, 종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산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는 재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시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제4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은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제1항 중 “출국증명서나 출국예정증명서”를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 한다.

제40조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을 “소득이 발생하였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을 “소득 발생연도에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여 정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급을 정지”를 각각 “지급을 우선 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4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를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으로 한다.

제6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감액받은 사람이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합산기간에 대한 급여의 감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보고시 기금 결산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제83조 중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를 “공단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여야”로 한다.

제84조제2항제1호 중 “연 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를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별표 4 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2918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부칙 제10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같은 영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의 합산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인정받은 경우의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해당 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

보수월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공무원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공무원 임용 당시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제3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61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재직기간 소급통산 등)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재직기간 소급통산은 이 영 제23조 개정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94조제2항 관련)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득·과세·환급자료, 직장 및 사업장의 종류 관련 자료
4.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관한 자료와 각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자료 및 건강검진 결과자료, 의료급여 관련 자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에 관한 자료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성립·적용·탈퇴·해지 및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등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와 급여에 관한 자료, 가입자 종류별 대상기관과 보수월액에 관한 자료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 관련 사건번호, 개시결정일, 면책결정일, 당사자 등에 관한 자료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에 관한 자료
8. 「가사소송법」에 따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관한 자료
9.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및 재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 형사재판 판결문,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경찰서에 접수된 가출 또는 실종신고에 관한 자료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부동산등기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건물,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 및 어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의 등기·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
11. 「선원법」에 따른 선박 승선자에 관한 자료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1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자료
14. 「국적법」에 따른 국적상실·국적취득 등에 관한 자료
15.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에 관한 자료
16.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관한 자료
17.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에 관한 자료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자료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화장 등 장사에 관한 자료
2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등에 관한 자료
21.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등에 관한 자료
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학금 및 그 외의 장학금 지급내역 및 학사정보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2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및 그 외의 장학금 및 학사정보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2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과 「보험업법」, 「선주 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보험금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보험금 및 공제금의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26. 그 밖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별표 3에 따른 기관·법인·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공무원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자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u><단서 신설></u>	제10조(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 ① ----- ----- ----- ----- ----- ----- ----- ----- ----- ----- 다만,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종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산정한다. ② (생략) 제20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u><신설></u>
제20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u><신설></u>	제20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

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받은 경우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합산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 및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간 합산신청서는 재임용 후 퇴직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u><신설></u>	② -- 제1항----- ----- ----- ----- ----- ----- 제23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26조(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① (생략)	제26조(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 전체(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의 총액을 공무원 전체의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1만원 미	② ----- ----- ----- ----- ----- ----- ----- ----- ----- -----

[illegible]

②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기금의 운용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1. 각종 대부 및 할부매매의 이 율: <u>연 3퍼센트 이상으로 하 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u> 2. 3. (생 략)	② ----- ----- -----. 1. ----- --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 행 가계대출금리 등을 고려하 여 <u>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u> 2. 3. (현행과 같음)
---	--